



# 공공 매체 해남소식

2020년 7월 16일(475호)

## HAENAM NEWS

### ◆ 군정목표 ◆

빛나라 땅끝

다시 뛰는 해남

### ◇ 군정방침 ◇

현장중심 소통행정

살기좋은 부자농촌

채류하는 문화관광

생동하는 지역경제

감동주는 맞춤형복지

발행인: 해남군수발행처: 기획실 주소: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해남군청  
대표전화 061)530-5321팩스 530-5574홈페이지 <http://www.haenam.go.kr>  
◎ 본지에 실린 광고·고시·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◎

## 공 고

◎ 해남군 공고 제2020 - 1770호 ----- 2

군 보

해남군 공고 제2020 - 1770호

##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

『산지관리법』 제18조의5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7. 14.

해 남 군



연번	신청인		신청지			면적(m <sup>2</sup> )		용도
	성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신청면적		
1	김OO	현산면 월송리	산123-6	임	16,775	2,950	동·식물관련시설 (축사 증축)	
2	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한우야	화원면 산호리	610	전	1,101	1,101	동·식물관련시설 (축사 증축)	
			609	전	1,150	1,150		
			607-1	전	1,735	567		
			산164-1	임	794	167		
			합계		4,780	2,985		

○ 허가기간: 허가일로부터 2년  
○ 공고기간: 2020. 7. 15. ~ 2020. 7. 29.

○ 이의신청 방법

-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2020년 7월 29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산지관리법 제18조의5(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)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(1. 가옥의 소유자,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, 공장의 소유자, 대표자, 종교시설의 대표자)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-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
  -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  -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(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)

※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(이해관계인의 범위 등)의 의견수렴은, 산지의 전용면적이 30,000㎡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, 주민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